

신구조문대비표
「관세법 시행령」

관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2274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	관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2352호, 2022. 1. 21., 타법개정]
<p>제9조(담보물의 평가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공장재단·광업재단·선박·항공기 또는 건설기계: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</p>	<p>제9조(담보물의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공장재단·광업재단·선박·항공기 또는 건설기계: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</p>